

# 정 관

**사단법인 국제스포츠교류협회**

# 사단법인 국제스포츠교류협회 정관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"사단법인 국제스포츠교류협회" 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한다.

### 제2조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
### 제3조(목적)

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,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스포츠 행사와 전문적 교육을 진행하고,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양성사업을 전개하여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.

**제4조(사업)**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스포츠 클럽 개설·운영 및 대회 개최·참가 사업
2. 스포츠 재능나눔 사업
3.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저변확대 활동
4. 전문 스포츠 선수·지도자·심판 육성 및 교육 사업
5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하며,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.

## 제2장 회원

### 제5조(회원의 자격)

①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, 제7조(회원의 의무) 3항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
- ②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.
- ③ 단체회원일 경우 단체의 임직원 중 단체의 장을 회원으로 한다.
- ④ 본회는 회원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회원의 권리)**
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,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없다.

**제7조(회원의 의무)**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**제8조(회원의 탈퇴)**

-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본회는 회원의 탈퇴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.



**제9조(회원의 상벌)**

-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-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3장 임원**

**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장 1인
- 2. 이사 3인 ~ 10인 이내 (이사장을 포함한다)
- 3. 감사 1인

**제11조(임원의 선임)**

-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임원의 해임)**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**제13조(상임이사)**

-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**제14조(임원의 임기)**
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15조(임원의 직무)**

-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-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-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**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**
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 제4장 총 회

### 제17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18조(구분 및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19조(총회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## 제20조(의결정족수)
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회원1인에 한하여 가능하며,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총회의 기능)**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**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**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**제23조(총회 회의록)**

총회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5장 이 사 회**

**제24조(이사회의 구성)**
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25조(구분 및 소집)**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**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- 2.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27조(서면결의)**

-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28조(의결정족수)**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**제29조(이사회 의결사항)**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8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6장 재산과 회계**

### 제30조(수입금)
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### 제31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 제32조(예산편성)

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### 제33조(결산)
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34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제35조(회계의 공개)

-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-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
### 제36조(임원의 보수)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7장 사무부서

### 제37조(사무국)

-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
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 제8장 보칙

### 제38조(법인해산)

-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**제39조(정관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40조(규칙제정)**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

## 부칙

### 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3조(설립당초의 주사무소의 소재지)

본회 설립 당초의 본회의 주사무소는 "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8, 718호"에 둔다.

**제4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**

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직위	성명	생년월일	주소	임기
이사장	이 명 진	1972. 03. 15.	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9가길 80, 503호	3년
이사	이 훈 민	1977. 08. 19.	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23-38, 504호	3년
이사	공 경 식	1975. 02. 05.	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39, A동 1001호	3년
이사	김 덕 현	1972. 03. 03.	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77, 609동 506호	3년
이사	한 경 록	1972. 01. 20.	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, 217동 1302호	3년
감사	백 윤 수	1971. 07. 11.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, 1동 1101호	2년

**제5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**
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.

발기인 대표 이 명 진



발기인 이 훈 민



발기인 공 경 식



발기인 김 덕 현

